

## 자립준비청년의 자활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과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활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의 자활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 기관간 협력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 내용) 협약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상호 적극 협력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를 의해 결정한다.

- ① 자립준비청년 자활 지원 활성화
  - 가. 자립준비청년 정보 교류를 통한 자활 지원 체계 구축
  - 나. 상호 기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홍보
  - 다. 기타 취·창업 등 자립준비청년의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② 기관 간 교류·협력 활성화
  - 가. 기관 상호발전을 위한 지식 공유
  - 나. 상호 기관 벤치마킹, 제도개선 시 협력
  - 다. 상호 기관 운영시설 지원 및 활용
- ③ 협약 기관은 본 협약 내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역할 및 진행) 본 협약의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협약 기관은 상호 협의를 통한 합리적 역할 분담으로 업무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세부 사항은 기관별 제규정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제4조(보안유지) 협약 기관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인지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정보를 협약기관의 동의 없이 협약의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외부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별도의 협의, 통보 부재 시 2년간 본 협약이 연장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단, 본 협약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 원칙을 기술하려는 것으로 협약 기관 간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제6조(경비부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변경 및 해지) 협약 기관은 상호 협의 하에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본 업무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 기관은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상호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3년 8월 17일



원 장 정 해 식

정 해 식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원 장 정 의 중

정 의 중